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강일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2024. 7. 10.
3. 회 부 일: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실무상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공판조서는 요약방식으로 기재되고 있어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판조서 기록 방식은 ‘문자’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하여 음성, 영상

등에 비해 법정에서의 상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전세계적으로도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와 행정부의 주요한 공식 회의는 상당부분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공판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재판과정이나 그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바로잡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뿐임. 특히, 법정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공판조서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당사자들로부터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재판하는 등 법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따라서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음.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은 재판 한 건 한 건 집중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반면 법정 바깥에서의 사후적인 조서 확인 및 정서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게 해 법정에서의 재판에 중심을 두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함.

또한,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시간적, 공간적 여지가 줄어들고 동시에 법정 외 변론이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후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재판녹화는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함.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에 대해 재판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대법관 지명 시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영상을 공개하는 등 법관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도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4항·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정 심리에 대해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도록 하며, 그 사본에 대한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u>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u>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u>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u>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u>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u> ----- ----- ----- ----- <u>하고,</u> ----- ----- ----- ----- <u>한다. 다만,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u> <u>③ (생 략)</u> <u><신 설></u>	<u>우에는 예외로 하되, 영상녹화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u> <u>1. 제294조의3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u> <u>2.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u> <u>3.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음물 등이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 <u>4. 속기, 녹음, 영상녹화를 할 경우 공판심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다.</u> <u>③ (현행과 같음)</u> <u>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u>
--	--

<신 설>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 ②
(생 략)

<신 설>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 국가 기밀의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속 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第57條(公務員의 書類)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은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녹음물의 처음과 끝에 녹음을 진행한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의 음성으로 녹음해 두어야 하며, 공무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

<u><신 설></u>	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물의 처음과 끝에 영상녹화를 진행한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영상녹화해 두어야 하며, 공무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경과를 기술하는 조서로, 「형사소송법」 제56조¹⁾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하여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배타적 증명력 또는 절대적 증명력)하고 있음(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9조(조서에의 인용)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또는 이의제기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현행법상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고(「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1항³⁾),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변경청구나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54조제4항)

2)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공판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개정안은 심리의 전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작성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여 공판조서의 부정확한 기재 방지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재판예규에 따르면, 현재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와 피고인신문절차를 모두 녹음하고 있고,⁴⁾ 대부분의 심리를 속기하고 있으므로,⁵⁾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또는 업무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2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피고인신문절차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3조(속기 등의 실시와 고지) ② 재판장은 제2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고지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사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등이 불가능하고, 속기 등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 등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만, 안 제57조에 대하여는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안 제57조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처음과 끝에 영상녹화를 진행한 연월일과 소속공무소에 대한 정보를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녹음물과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류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안 제56조의2제2항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53조⁶⁾는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는 등 작성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7조와 같이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절차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3

6)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